폐수배출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우수정기주식회사의 폐수배출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 환경 보전에 노력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우수정기주식회사의 전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으로,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며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폐수(물환경보전법제2조4호)” 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2. “ 하수(하수도법제2조1호)” 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3. “ 수질오염물질(물환경보전법제2조7호)” 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을 말한다.

4. “ 폐수배출량(물환경보전법시행령별표13)” 이란 그 사업장의 용수사용량 (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및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중 최종 방류구를 통해 나간 물의 양을 말한다.

5. “1일 최대폐수량(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4)”이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한 양을 말한다.

6. “공공폐수처리시설(물환경보전법제2조17호)”이란 공공폐수처리구역의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 2 장 폐수배출 시설

제 4 조(폐수배출시설) ① 우수정기주식회사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6 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적용 및 분류하여 관리한다.

② 우수정기주식회사는 사업장의 시설에 대하여 사전에 시설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여부와 폐수배출량을 파악하여야 하며, 이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수질오염물질, [별표 3] 특정수질유해물질, [별표 4] 폐수배출시설을 따른다.

구분	폐수배출량	예외사항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 일 최대 0.01 ㎥ 이상 (10 ℓ)	①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 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제품 제조시설(폐수량에 관계없이 모두 폐수배출시설) ②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 1 호부터 제 81 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 ㎥ 이상{「수도법」 제 7 조에 따른 상수원보호 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 고시 제 2019-105 호, 2019. 6. 13. 발령·시행)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을 말함. 이하 같음)은 1 일 최대 폐수량이 0.2 ㎥ 이상}일 경우에 폐수배출시설에 해당]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 일 최대 0.1 ㎥ 이상 (100 ℓ)	2) 금속광업시설 및 82) 그 밖의 폐수배출시설[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1 ㎥이상{「수도법」 제 7 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은 1 일 최대 폐수량이 2 ㎥ 이상}일 경우에 폐수배출시설에 해당] ② 다음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 1 일 최대 폐수량이 20 ㎥ 이하로서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도법」 제 2 조제 9 호 및 제 13 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 1일 최대 폐수량이 20 ㎥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그 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 12 조)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1일 최대 폐수량이 10 ㎥ 이하로서 원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의 수질오염물질만 배출되고, 그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항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가·신고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원료(용수 포함, 이하 같음), 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별표 13 의 2 에 따른 기준 이상 포함된 폐수(원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 다만, 원료로 사용되거나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용수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용수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중 수돗물의 수질기준 이하인 폐수배출시설은 가목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서 제외한다.

** 1 일 최대폐수량 :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위탁처리·재이용하거나 폐수배출공정 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두부 및 떡 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도법」 제 2 조제 9 호 및 제 13 호에 따른 공공·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두부 및 떡 제품을 식히거나 담근 폐수는 1일 최대 폐수량에서 제외.

2)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하여 위탁처리 등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 단일 배출공정만 있는 경우에는 순환량이 아닌 그 기계나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으로 산정.

제3장 환경기술인 임명

제5조(환경기술인 임명) 우수정기주식회사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한다. 환경기술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별표 1 참고).

[별표 1] 사업장 분류에 따른 환경관리인 자격요건

종별	구 분	환경관리인 자격기준
1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이상인 사업장	수질환경기사
2	1일 폐수배출량이 700㎥이상 2000㎥미만인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3	1일 폐수배출량이 200㎥이상 700㎥미만인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이상 관련분야 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한자
4	일 폐수배출량이 50㎥이상 200㎥미만인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가 당해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 이상
5	상기 4종 사업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주) 1. 대기환경관리인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환경관리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4종 및 5종사업장은 3종사업장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일 10㎥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 4 장 폐수배출 절차

제6조(폐수처리) 폐수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발생된 폐수는 폐수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2. 폐수위탁은 제41조에 따라 위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로 한정한다.

3.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위탁처리할 폐수의 1일 최대폐수량을 기준으로 5일분 이상을 성상별로 보관할 수 있도록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그 양을 알아볼 수 있는 계측기(간이측정자·눈금 등)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된 폐수를 이송저장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에서 직접 위탁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폐수성상이 서로 다른 폐수를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판·인쇄, 자동식사진처리, X-Ray시설에서 위탁처리하는 현상액, 정착액 및 세척액은 각각 분리수거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18리터 이상의 합성수지용기의 윗부분과 양측면에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크기의 바탕에 현상액은 황색바탕에 검정색으로 ‘ 현상폐수’라고 적고, 정착액은 녹색바탕에 검정색으로 ‘ 정착폐수’라고 적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자동식 사진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세척액의 수질오염물질 농도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위탁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폐수수탁처리업자와 폐수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폐수(위)수탁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로 기명날인한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사업장에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7. 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휴업, 폐업 또는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의 일시정지 등을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새로 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8. 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위탁처리폐수에 대한 폐수성상별 위탁물량 및 폐수수탁처리업소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